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제 공 일 : 2012. 3. 21.

제 공 자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

과 장 : 윤 영 렬

사무관 : 박 제 원

전 화 : 031-463-1598

쪽 수 : 4P

별첨자료 : 있음(5P)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12년 3월 2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려인삼, 업체별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

- 인삼단계에서 가공완제품까지 안전성·유통검사 철저히 강화 -

〈주요내용〉

□ 인삼 중간제품의 안전성검사 관련규정 강화

- 시료채취 방식을 업체 자율에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하도록 개선
- 업체별 안전성검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이상 하도록 대폭 강화

□ 시중유통 인삼제품의 품질관리 및 부정유통단속 강화

- 인삼검사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확대(연 1회 → 분기별)
- 인삼 품질검사 과정에 소비자단체 참여 및 검사수량 확대
- 대도시 사무소의 역할·기능 강화방안에 따라 집중단속 실시

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이하 '품관원', 원장 나승렬)은 최근 인삼 효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인삼제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인삼제품의 안전성검사 및 부정유통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3월22일 밝혔다.

□ 품관원은 이를 위해 금년 1월26일 「인삼산업법」에 따른 "인삼 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(품관원 고시)"에서 인삼제품의 검사 시기와 방법 등을 개정하여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였다.

○ 제조업체에서 인삼제품의 연근(年根)·체형·색택 등 관능검사를 하기 전에 실시하는 중간제품의 안전성검사 시료를 그 동안에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취 하였다.

○ 이로 인하여 검사과정에서 안전성 부적합품이 격리되지 않는 등 인삼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엄정하게 채취하도록 개선 함으로써 고려인삼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.

○ 또한, 제조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제조한 중간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업체 자율적으로 1점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업체가 일시에 제조한 경우 연간 1점만 안전성검사를 실시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한 월 1점이상 안전성검사를 하도록 대폭 확대하였다.

□ 지난 3월14일에는 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인삼검사소 및 농협, KGC인삼공사, 동원F&B, (주)일화, 대동고려삼, 인삼코리아 등 42개 제품생산 및 검사업체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 및 인삼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.

○ 그 동안 매년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, 급변하는 시장에서의 능동적 대처를 통한 인삼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분기별로 교육을 확대하는 등 검사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삼제품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* 인삼 수출액 : ('00) 79백만\$ → ('05) 82 → ('10) 124 → ('11) 189

□ 현재 홍삼·태극삼·백삼·흑삼은 「인삼산업법」 제17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필증을 부착한 제품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다.

○ 인삼제품에 대한 검사는 국정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고 있으며, 지난해 인삼류 검사물량은 1,270톤으로 이중 국정검사기관인 농협인삼검사소가 40%를 했으며, KGC인삼공사, 동원F&B, 등 33개 자체검사업체가 60%를 했다.

○ 품관원은 업체별 품질검사물량을 기준으로 시중유통 품질검사 수량을 정하고, 인삼시장 및 판매점 등에서 무작위로 인삼제품을 수거하여 관능 및 안전성 등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.

- 올해 품질검사 수량은 220점으로 지난해 보다 6%늘리고, 검사 과정에 소비자단체를 참여시켜 품질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인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.

○ 검사기준 미달품은 관련법령(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)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수거·폐기하고, 연근·등급·편급·수분·중량 위반은 재검사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을 하고,

-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(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, 별표4)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최근 1년간 1회 위반한 경우 검사정지 1개월, 2회 위반은 검사정지 6개월, 3회 위반은 지정취소의 조치를 하게 된다.

- 또한, 이들 위반 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품질 검사 시료를 우선적으로 채취하고,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.

□ 특히, 인삼제품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설·추석 등 명절과 가정의 달 등 소비가 대폭 늘어나는 시기에 수도권 최대 유통 시장인 경동시장과 수삼 시중 유통량의 70~80%를 차지하는 금산인삼시장 등 주요 인삼유통단지에서 부정유통근절을 위한 지도·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○ 금년도 품관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도시 사무소의 「소비자 중심 역할·기능 강화 방안」에 따라 경동시장 등 서울지역은 서울사무소가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, 금산 지역은 충남지원과 금산사무소가 합동으로 편성하여 미검사품 및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관세청,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인삼제품에 대한 부정유통경로 등 정보수집을 강화하고, 필요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품관원 관계자는 인삼류 부정유통방지는 소비자들의 신고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인삼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및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전용전화(1588-8112)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.

[참고자료]

1. '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' 주요개정 내용

(품관원 고시 제2012-2호, 2012.1.26)

□ 검사대상 모집단 편성

- 검사대상 모집단 편성은 원료수삼의 경작자 및 경작필지, 구입시기, 구입장소, 제조시기 등을 감안하여 품질이 동등한 수준의 제품을 대상으로 구분 편성하되,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 다만 자체검사업체가 익월 검사계획이 있는 경우 그 물량을 모집단으로 편성한다.

□ 검사신청

- 검사신청업체는 관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신청 모집단에 대한 삼종, 연근, 신청물량, 수삼 산지, 제조월일 등을 기록한 후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에 신청하고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품관원 해당 사무소에 검사용 시료채취 입회요청 하여야 한다.

□ 모집단별 시료채취

- 이화학(농약 및 중금속 등)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관능검사(연근검사품질검사) 전에 검사대상 모집단별로 1점 이상을 채취하되,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품관원 해당 사무소는 시료채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.

2. 인삼류 검사 및 단속실적

□ 검사주체별 검사실적

구 분	'09	'10	'11
계	1,327톤(100%)	1,360(100%)	1,270(100%)
농협인삼검사소	695(52.4)	566(41.6%)	506(39.8%)
자체검사업체 (업체수)	632(47.6) (28)	794(58.4%) (30개소)	764(60.2) (32개소)

-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검사물량이 60% 정도이며, 자체검사업체 증가에 따른 검사물량도 증가 추세임

□ 삼종별 검사실적

구 분	삼종별	'09	'10	'11
합 계		1,327톤	1,360	1,270
농 협 인삼검사소	계	695(100%)	566(100%)	506(100%)
	홍 삼	237(34.1)	221(39.1)	231(45.6)
	태극삼	9(1.34)	11(1.9)	13(2.6)
	백 삼	449(64.6)	334(59.0)	262(51.8)
자 체 검사업체	계	632(100%)	794(100%)	764(100%)
	홍 삼	483(76.4)	606(76.3)	592(77.5)
	태극삼	372(5.9)	57(7.2)	52(6.8)
	백 삼	112(17.7)	131(16.5)	120(15.7)

□ 미 검사품 적발 실적

구 분	'09	'10	'11
적발 건수	68	34	34

3. 인삼류 검사품 품질검사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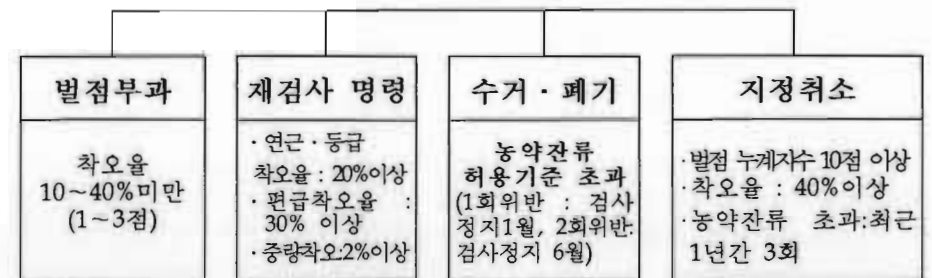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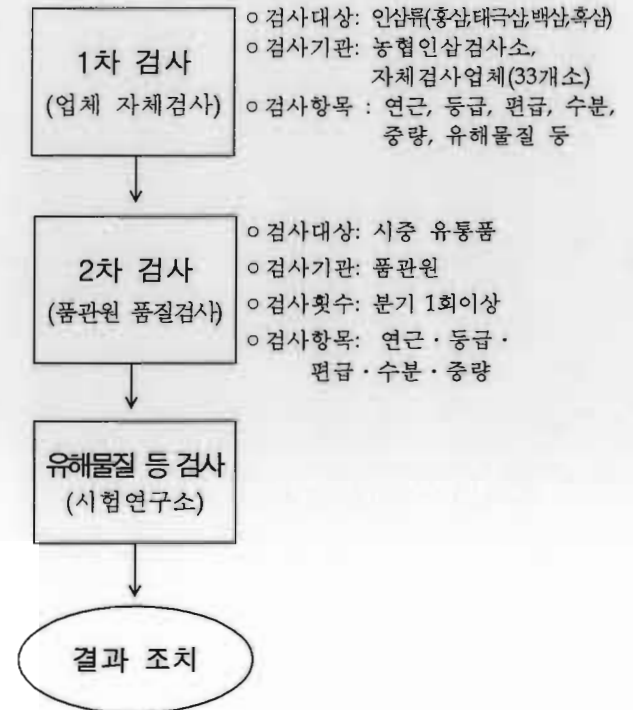
□ 확인검사 내역 및 조치결과

구 분		'09	'10	'11
확인 내역	점검회수	4회	4회	4회
	점 수	151	186	206
	기준미달 (위격비율)	12 (7.9%)	14 (7.5%)	19 (9.2%)

<농약잔류분석 결과>

구 분	'09	'10	'11
분석건수	151	186	206
부적합 (비율)	2 (1.3%)	3 (1.6)	1 (0.5)
검출성분	보스칼리드 2	톨크로포스 1 로르파리포스 1 프로시미돈 1	보스칼리드 1

4. 인삼류 유통제품 품질검사 절차



※ 관련 규정 : 인삼산업법 제17조(검사), 시행규칙 제18조의3(검사의 기준 등)

5.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현황(33개소)

<2012. 2월 현재>

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지정		
			홍삼	태극삼	백삼
한국인삼공사	김용철	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200	○		
백년인삼농사	염현숙	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02	○		○
백제인삼농협	신동석	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25-14	○	○	
금산인삼농협	박천정	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원리 38-3	○		
대동고려삼	최성근	충남 금산군 군북면 천율리 152	○	○	○
고려홍삼원(주)	조기환	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671	○		
대길인삼	길정섭	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394	○		
웰빙홍원인삼제조장	신유진	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벌리 446-1	○		
(주)유엔아이금산지점	민홍기	충남 금산군 금산읍 양지리 433-7		○	
풍기특산물 영농조합법인	박관식	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리 654-2		○	○
강화인삼협동조합	황우덕	인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243-1	○		
삼화삼업사	이종열	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394-1	○	○	
(주)고려바이오홍삼	문병두	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317	○		○
풍기인삼협동조합	신원균	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78	○		
금산인삼가공(주)	김성관	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189	○	○	
(주)한국산업	노정진	경기 오산시 부산동 536		○	
홍익인삼영농조합법인	허계윤	충남 금산군 금산읍 읍지리 393-9	○		○
풍기진생영농조합법인	김성진	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399-5			○
김포 파주인삼농협	조재열	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17-4	○		
개성인삼농협	김인수	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397	○		○
충북인삼고려인삼향	최만수	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131-2	○		
NH한삼인	이준태	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310-1	○		
전북인삼협동조합	문병연	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540-1	○		○
포천인삼영농조합법인	박창학	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276	○		○
인삼코리아	손종봉	충남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343-5	○		○
인삼월드	박정기	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41-1	○		○
중앙인삼영농조합법인	신두연	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505	○		○
순우리인삼영농조합법인	최후자	경북 영주시 풍기읍 전구리 289			○
우신산업주식회사	황광보	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85-5		○	○
국보홍삼제조장 영농조합법인	김영근	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190	○		○
강화삼홍인삼(주)	윤청광	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385	○		
(주)동원에프앤비	김해관	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38-1	○		
농업법인회사 유청(주)	강근목	충남 금산군 군북면 내부리 36-5	○	○	

※ 인삼검사소 : 자체검사업체 이외의 업체물량 검사